

의안번호	2213652
의 퇴 인	오기형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7.
추계번호	25E565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여
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 명확화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7조제2항(배당소득)	○ 주주가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배당소득(의제배당)으로 규정 - (현행) 거래내용 등 법률행위 해석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- (개정안)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주식 양도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, 거래소를 통한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
2	안 제94조제1항(양도소득의 범위)	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제2항(배당소득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94조제1항(양도소득의 범위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개인 주주가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배당소득(거래소를 통하는 경우 양도소득)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, 과세방식 변경에 따라 소득세수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음

- 현재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주(개인)의 주식양도차익은 법률행위 해석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
 - 주식의 양도로 간주되는 경우,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의 경우 25%(양도차익 3억원 이하 20%)의 세율이 적용
 - 의제배당으로 간주되는 경우,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(6~45%)로 과세
 -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 이외에,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, 대금의 결정방법,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노력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가 부재하여 세수효과의 방향 및 규모를 추계할 수 없음
- 개인이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 중 얼마나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알 수 없음
 - 또한 개인주주의 산출세액은 소득 구조, 지분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, 개인 특성에 따른 종합소득 현황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것이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